

### 직원인사규정 신규 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제33조(징계의 사유 및 종류) ① ~ ③ 생략 ④ 감봉은 1회 임금지급 시에만 한하며, 감봉총액은 월봉액의 10%를 감한다. ⑤ 생략	제33조(징계의 사유 및 종류) ① ~ ③ 현행과 같음 ④ 감봉은 1회 임금지급 시에만 한하며, 감봉액은 월봉액의 62분의 1을 감한다. ⑤ 현행과 같음	2019년도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감봉 규정 변경